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1480      |
| 의 퇴 인  | 임호선 의원       |
| 회 답 일  | 2025. 7. 24. |
| 추 계 번호 | 25B3784      |

#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 | 안 제31조(약물복용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) |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 공무원”이라 함)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 <sup>1)</sup> 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음.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함(제2항 신설)<br>1. 경찰공무원<br>2. 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| 재량/의무 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   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1조(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) | ×    | 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1)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1조(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"약물복용의 상태"란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대마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

□ 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(안 제31조제2항 및 제4항 신설)

-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약물복용 검사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검사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하고, 사용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검사 시약 등이 달라지는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의 단가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- 약물복용 등 검사 물량과 관련하여, 유사 조문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30조<sup>2)</sup>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 및 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(이하 “관계 공무원”이라 함)으로 하여금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소 및 함정 근무 경찰관이 현장 음주 측정 업무를 실시하고 있고,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 측정 건수는 32,539건임
  - － 다만, 해양경찰청에 따르면, 상기 음주측정 건수는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9조<sup>3)</sup>의

2)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0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)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"술에 취한 상태"란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관계 공무원"이라 한다)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.

1. 경찰공무원

2. 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
3)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9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)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(이하 "운항자"라 한다)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(이하 "도선사"라 한다)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적용을 받는 운항자 및 도선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로, 낚시어선 등 배의 종류 등에 따른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,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음주측정 건수 통계는 확보하기 어려움

[표 1] 선박 운항자 등 음주측정 수행 경찰 인원

(단위: 명)

| 파출소 인원 | 합정 인원 | 합계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|
| 2,716  | 4,206 | 6,922 |

자료: 해양경찰청

[표 2] 최근 5년간 현장 음주 측정 현황

(단위: 건)

| 구 분      | 2020   | 2021   | 2022   | 2023   | 2024   | 연평균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현장 음주 측정 | 36,541 | 35,470 | 28,298 | 30,867 | 31,520 | 32,539 |

자료: 해양경찰청

- 약물복용 등 검사 단가와 관련하여, 마약류 타액 간이시약의 단가는 2024년 기준 26,000원(해양경찰청 자료)이고, 마약류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는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의 종류 등에 따라 시험방법 및 사용 시약 등이 달라 검사 1회당 단가를 특정할 수 없음(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)

2.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

3.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

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.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 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 | 박인재 | 김신애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박인재 | 02-6788-4650 | powerreset@nabo.go.kr |